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03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허종식 · 유동수 · 박찬대
노종면 · 김교홍 · 이훈기
박 정 · 허성무 · 복기왕
이재관 · 최혁진 · 이용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나.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

제43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u>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u> 사업을 말한다. <u><신설></u> <u><신설></u> 12. ~ 14. (생략) ② (생략)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2조(정의)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u>다</u> <u>음 각 목의</u> -----. 가. <u>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u> 나. <u>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운송을 이행하는 사업</u> 12.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① ----- -----<u>제2조제1항제11호</u>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로 국 <u>토교통부령으로</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이 경우 <u>제2조제1항제11호</u> <u>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업별로</u> <u>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	---